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지휘부 인적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 총경에서의 경력평정기간을 단축하는 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령안에 따라, 총경에서의 경력평정 산정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(별표7, 별표8)

2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, 같은 표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표 제2호(종전의 제1호) 중 “총경·경정·경감”을 “경정·경감”으로 한다.

1. 총경

경력 평정 대상기간	1년	2년	3년
점수(월 0.889점)	10.668점	21.336점	32점

별표 8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경력 평정 대상기간	1년
점수(월 0.250점)	3점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